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268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2235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손훈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변론 종결2021. 12. 8.

판결 선고2022. 2. 16.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2235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5.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경남 김해시 E 임야 42㎡'를 '김해시 E 임야 42㎡(인근 부동산 실거래가격 중 최고가 고려할 경우 시가 약 15,784,482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1.의 마항을 추가한다.

『마. 2019. 8. 5.경 C의 소극재산

1) C가 2018. 12. 1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19767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3,489,909,192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4.부터 2019. 6.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2019. 9. 26. 기준 위 C 등 연대채무자들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가 22,818,690,718원(= 원금 6,859,706,666원 + 지연손해금

15,908,149,5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사이에 변제된 금액을 고려해보더라도 C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9. 8. 5. 무렵에도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위 22,818,690,718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2019. 8. 5.경 C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20,000,000원의 가압류채무1)를 부담하고 있었다.

3) C 소유의 김해시 G 임야 1713㎡(2019. 3. 11.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 또는 E 임야 42㎡에는 2016. 2. 11. 김해시의 각 압류등기가, 2016. 7. 1. 채권자 H 명의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4) C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 5억원(부산지방법원 2016금1225호)에 대하여 2018. 8. 28.자 접수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I)에서 C의 채권자들이 합계 53,176,054,93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던 점,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표가 2020. 4. 23.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2019. 8. 5.경에도 위 배당절차의 신고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53,176,054,936원2)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C가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S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T과 주식회사 U은 V조합 등 17개 W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위 사업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이후 C를 비롯한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채무자들은 2014. 1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X에게 경남 김해시 Y 외 114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고3)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채권자인 위 17개 W조합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17개 W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는 위와 같이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있었으므로, C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담보부동산들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있기 전인 2019. 4. 17.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Z 주식회사에 55,640,000,000원에 매도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담보부동산들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원고는 그 매각대금 중 53,386,602,422원4) 을 배당받았는데, 위 매각대금에 관한 정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들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보부동산들의 매각대금 중 C에게 배당된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C의 무자력을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5회에 걸쳐 C에게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C의 대표이사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가 F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돈이 C가 명의 계좌가 아닌 F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C와 D 사이의 조정이 성립된 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은명

판사오영두

판사김상현

별지

1) 근로복지공단의 경남 김해시 E 임야 42㎡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 사건 사해행위인 위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9. 8. 7.에 있었고, 그 가압류결정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2019. 8. 8.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가압류채무의 피담보채무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인 점에 비추어 볼 때(울산지방법원 2019카단14488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근로자에 대하여 위 채무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2) 53,176,054,936원 (= 주식회사 J 200,000,000원 + K 38,066,621원 + L 13,860,267원 + M 10,027,582원 + N 19,657,405원, O 25,896,876원 + H 103,336,195원 + 원고 52,400,000,000원 + 주식회사 P 108,336,473원 + Q 주식회사 65,917,123원 + 주식회사 R 190,956,394원)

3) 이후 주식회사 X은 2018. 7.경 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7. 19.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부동산들에 대한 매각대금 55,640,000,000원 중 세금과 관리보수 등에

총당되고 남은 금액